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8.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구미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내 시민의 이용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특정 종목 사용료 신설 요구 등에 따른 사용료를 정비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외요금 및 특정종목 일일요금 신설 등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규정 반영(안 별표 1, 별표 4)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구미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관 사용료(제10조 관련)

1. 대인 사용료

구 분			사용료(원)		비고	
종 목	사용기간		대 상	관내		관외
수 영	월 회원		성 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1 일	개 인	성 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회 원	단 체	성 인	3,000	4,5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아쿠아로빅	월 회원		성 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헬 스	월 회원		성 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1일 회원		성 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3,000	
에어로빅, 차밍,요가, 필라테스	월 회원		성 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배드민턴	월 회원		성 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1일 회원		성 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농 구	1일 회원		성 인	2,500	3,500	2시간 기준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 위 종목 외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용어의 정의〉

- 1일 1회 “3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강습시간은 종목별로 상이함.
- “월 회원”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 3~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란 초등학생(7세~12세 이하)을 말함.
- “청소년”이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을 말함.
- “성인”이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관내” 요금 적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함.

2.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단위	사용료(원)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관	체육행사	주간	90,000	120,000	
		야간	120,000	150,000	
	체육행사 외	주간	120,000	150,000	
		야간	150,000	180,000	
소극장	공연,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7,000	60,000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이며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임.

※ 시설 사용시 4시간 이상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비고
행사 및 대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사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역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100분의 10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 또는 구미시 다동e카드, 한부모가족 감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감면인 경우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 관 부 서		체육시설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민 영 미
	팀 장	김 현 준
	담 당 자	차 영 동 (480-4904)